

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71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년 6월 29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시·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관련 자문의 경우에 지역경제협의회로 본다는 제2조 단서의 규정이 있으므로, 희망경제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하지 않으며,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‘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정원을 9명으로 조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시·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관련 자문의 경우에 지역경제협의회로 본다는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삭제하지 않으며, 희망경제위원회의 명칭을 그대로 함(안 제1조, 제2조)
- 희망경제위원회의 기능에서 ‘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’과 분과위원회에서 ‘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’를 삭제하고,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정원을 9명으로 조정함(안 제4조, 제11조)

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안 제1조 중 “「시·도경제협의회규정」 제9조에 의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경제 주요현안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협의하기”를 “경제정책의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”로, “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시장 소속하에 희망경제위원회”로 한다.

안 제2조 중에 “지역경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)”를 “희망경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”로 하고 제2조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시·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대한 의견의 수렴 및 조정과 관련한 자문을 하는 때에는 「시·도경제협의회규정」 제9조에 따른 지역경제협의회로 본다.

안 제4조의 본문의 “협의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고, 제11호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「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

12. 다른 법령 및 조례가 위원회의 자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
안 제4조제17호를 제16호로 한다.

안 제5조제1항과 제3항제8호 중에 “협의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안 제7조제1항 중 “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”를 “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”로 한다.

안 제8조의 조명을 “(협회의 회의)”에서 “(위원회의 회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협회의”를 “위원회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장은 협의회”를 “위원장이 위원회”로 한다.

안 제10조제1항 중 “시장은 경제진흥본부장에게 협회의”를 “시장은 경제진흥본부장에게 위원회의”로 “협의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며 제2항 중 “협회의”를 “위원회의”로 한다.

안 제11조제1항 본문 중 “협회의”를 “위원회의”로 하고, 제1호를 삭제하며, 제2호부터 제4호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로 하고, 제2항 중 “7명”을 “9명”으로 한다.

안 제12조 중 “협의회 회의”를 “위원회 회의”로 한다.

안 제14조 중 “외에 협의회회의”를 “외에 위원회회의”로 하며, “대하여는 협의회회의”를 “대하여는 위원회회의”로 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경제정책의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문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소속하에 희망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설치) 서울특별시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경제정책사무 전반에 대한 자문기관</p>	<p><u>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시·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경제 주요현안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</u> -- <u>서울특별시 지역경제 협의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설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<u>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(설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이 경우 시·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대한 의견의 수렴 및 조정과 관련한 자문을 하는 때에는 「시·도경제협의회규정」 제9조에 따른 지역경제협의회로 본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.

1. ~ 10. (생략)
11. 「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
12. 다른 법령 및 조례가 위원회의

----- 지역경제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-----
----- . 〈후단 삭제〉

제4조(기능) 협의회-----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-----
----- 협의회 -

-----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-
----- . 이 경우 시·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대한 의견의 수렴 및 조정과 관련한 자문을 하는 때에는 「시·도경제협의회규정」 제9조에 따른 지역경제협의회로 본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「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
12. 다른 법령 및 조례가 위원회의

<p>자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</p>	<p>----- -----</p>	<p>자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</p>
<p>13.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</p>	<p>12.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</p>	<p>〈삭제〉</p>
<p>14. ~ 16. (생략)</p>	<p>13. ~ 15. (현행 제14호~제16호와 같음)</p>	<p>13. ~ 15. (현행 제14호~제16호와 같음)</p>
<p>17. 시 관내 일자리 창출사업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</p>	<p>16. 〈삭제〉</p>	
<p>18. (생략)</p>	<p>17. (현행 제18호와 같음)</p>	<p>16. (현행 제18호와 같음)</p>
<p>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5조(구성) ① 협의회 ----- 30명 ----- ---- 구성하며,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%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.</p>	<p>제5조(구성) ① 위원회 ----- -- 30명 ----- ----- 구성하며,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%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.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</p>	<p>③ -----</p>	<p>③ -----</p>

의 자로 하며, 시장이
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산업경제정책관

2. 일자리정책관

3. 산업 및 경제 관
련 분야의 시민단
체(「비영리민간단
체 지원법」 제2조
에 따른 비영리민
간단체를 말한다)
에서 1년 이상 산
업·경제정책에 관한
업무를 수행한 자
로서 시민단체의
추천을 받은 사람

4. ~ 7. (생략)

8. 그 밖에 시장이
제3호, 제5호, 제6
호 중 어느 하나의
규정에 준하는 자격
이 있다고 인정되는
사람으로 위원회의
자문사항과 관련한
전문지식 및 경험이
풍부한 사람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

-----.

1. 창조경제기획관

2. 일자리기획단장

3. -----

----- 「비영리민

간단체지원법」 ---

4. ~ 7. (현행과 같
음)

8. -----

----- 협의회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

-----.

1. 창조경제기획관

2. 일자리기획단장

3. -----

----- 「비영리민간단

체지원법」 -----

4. ~ 7. (현행과 같
음)

8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(생략)

제8조(위원회의 회의)

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(생략)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와 안건을 각 소관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~ ⑥ (생략)

제10조(사무처리)

①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·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

① -----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회의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협회의 회의)

① ----- 협회의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장이 협회-----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무처리)

① 시장은 경제진흥본부장에게 협회의 -----

협회-----
----- 총괄·조정하게

(현행과 같음)

제8조(위원회의 회의)

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무처리)

① 시장은 경제진흥본부장에게 위원회의 -----

위원회-----
----- 총괄·조정하게

하여 경제진흥실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 하여 위원회 활동 지원부서를 두고 필요한 사무공간을 확보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산업·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활동 지원부서의 지원활동 중 안전의 검토·조정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,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 11 조 (분과위원회 등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.

할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협의회의 -----
----- 안전 -----

-----.

제 11 조 (분과위원회 등) ① 협의회의 -----

-----.

할-----.

② -----

----- 위원회의 -----
----- 안전 -----

-----.

제 11 조 (분과위원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1. 사회적기업, 예비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

2. 중소기업육성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산업경제분과위원회

3. 물가안정·소비자 보호 등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생활경제분과위원회

4.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·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

1. -----

-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

2. 지역경제 활성화
주요시책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산업경제 분과위원회

3. -----

생활경제 분과위원회

4. 대·중·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·중소상공인 -----

----- 풀뿌리경제 특별위원회

〈삭 제〉

1. 지역경제 활성화
주요시책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----
----- 산업경제 분과위원회

2. -----

생활경제 분과위원회

3. 대·중·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·중소상공인 -----

----- 풀뿌리경제 특별위원회

②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각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자문하는 안건의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② -----
----- 7명 -----
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수당 등) 협의회 회의 -----

-----.

제14조(운영세칙) -----
----- 외에
협의회의 -----

-----.

부 칙

② -----
----- 9명 -----
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수당 등)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운영세칙) (현행과 같음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
례는 공포한 날부터
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
조례 시행 당시 종전
의 규정에 따른 희망
경제위원회의 위원은
이 조례에 따라 위촉
된 것으로 보며, 위
원의 임기는 종전의
위촉일로부터 기산한
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
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3호와 제17호를 삭제하고, 제14호부터 제16호를 각각 제13호에서 제15호로 하고, 제18호를 제16호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50명”을 “30명”으로 하고, “구성한다.”를 “구성하며,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%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창조경제기획관
2. 일자리기획단장

제5조제3항제3호 중 “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”을 “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위원회의”를 “시장은 경제진흥본부장에게 위원회의”로, “처리하기 위하여 경제진흥실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위원회 활동 지원부서를 두고 필요한 사무공간을 확보할”을 “총괄·

조정하게 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회 활동 지원부서의 지원활동 중 안전”을 “안전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시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산업경제 분과위원회

제11조제1항제3호 중 “생활경제분과위원회”를 “생활경제 분과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같은 조 제1항제2호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4호 중 “소기업 및 소상공인”을 “대·중·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·중소상공인”으로, “폴뿌리경제특별위원회”를 “폴뿌리경제 특별위원회”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같은 조 제1항제3호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12명”을 “9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.</p> <p>1. ~ 12. (생략)</p> <p>13.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</p> <p>14.~15.(생략)</p> <p>17. 시 관내 일자리창출사업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18. (생략)</p>	<p>제4조(기능) ----- ----- ---</p> 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〈삭제〉</p> <p>13.~15. (현행 제14호~제16호와 같음)</p> <p>〈삭제〉</p> <p>16. (현행 제18호와 같음)</p>
<p>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<u>5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,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<u>산업경제정책관</u></p> <p>2. <u>일자리정책관</u></p>	<p>제5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30명</u> ----- --- <u>구성하며,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%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<u>창조경제기획관</u></p> <p>2. <u>일자리기획단장</u></p>

3. 산업 및 경제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1년 이상 산업·경제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

4. ~ 8. (생략)

3. -----
-----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-----

4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무처리) ①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·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제진흥실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위원회 활동 지원부서를 두고 필요한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산업·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활동 지원부서의 지원활동 중 안건의 검토·조정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,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사무처리) ① 시장은 경제진흥본부장에게 위원회의 -----

----- 총괄·조정하게 할 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안건 -----

-----.

제11조(분과위원회 등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.

제11조(분과위원회 등) ① -----

-----.

1.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

2. 중소기업육성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산업경제분과위원회

3. 물가안정, 소비자보호 등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생활경제분과위원회

4.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, 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

②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각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~ ⑤ (생략)

〈삭제〉

1.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시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산업경제분과위원회

2. -----

----- 생활경제분과위원회

3. 대, 중,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, 중소기업 -----
---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

② -----
- 9명 -----
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